

석유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 운 호

〈 산업지원부 석유정책과 서기관 〉

1. 개정의 의의

정부는 지난해 및 금년초에 걸쳐 행정규제의 전면적인 개혁 등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석유사업법령을 대폭 손질하였다. 금번의 법령 개정은 그 규모면에서 지난 '95~'96년간의 석유사업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번 개정작업에 포함되지 못했던 석유산업관련 규제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석유산업의 자유화를 한층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석유사업법의 경우 지난해에 2차례나 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는 석유정제업의 조기개방 등 시급한 사항에 대한 소폭 개정만을 목적으로 했으나 곧이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작업을 수용한 재개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작업이 다소 늦어져 4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유사업자들은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금번의 법령개정에는 그간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았던 석유유통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대폭 축소하고, 행

정편의적 측면에서 사업자들에게 요구하던 각종 신고 및 보고 등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데 그 특징이 있다. 그의 금번 법령개정에는 천연가스수출입업 자유화, 석유수입 부과금의 징수방식 개선 및 부산물에 대한 석유부과금 환급근거 마련 등 석유사업자들의 관심이 큰 사항이 다수 반영되어 있어 석유사업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석유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대폭적 완화

금번의 석유사업법령 개정은 지난 '95~'96년간의 법령개정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유통업 등록 및 신고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 등을 최대한 줄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당초 '99년 1월 1일 시행예정이었던 석유정제업 등록제의 시행이 '98년 10월 1일로 당겨진 것 외에는 사업관리 제도에 근

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출입사전승 인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등록요건이 보완되는 등 일부 유종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반영되었다. 석유정제업 등록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은 IMF 위기상황에서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허가제하의 외국인투자제한(50% 한도)을 철폐하기 위함이었으나, 일부 정유사의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법 개정이후 실제로 외국인이 국내정유사를 인수한 사례는 없었다.

(1) 석유정제업 분야

윤활기유 정제업이 등록대상 정제업에서 신고대상 정제업으로 전환되어 윤활기유 제조업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석유정제시설에 대한 신·증설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그간 석유정제업 허가제도의 잔재로서 남아 있던 정제시설별 관리제도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30일 이상 가동중지시의 가동중지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석유정제업자는 상업증류시설과 저장시설의 변동에 대해서만 변경등록을 하면 되고, 여타 시설의 신증설이나 공장가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적의무도 지지 않게 되었다.

(2) 석유수출입업 분야

금번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되던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연간 5만톤 이상의 LPG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LPG 전용 저장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받도록 하였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규제완화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액화석유유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LPG 수입계약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했던 LPG 수입승인 요건(저장시설 요건 및 국내수급상황 고려)을 완화하여 석유사업법에 수용한 것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는 건별 수입관리로부터 수입업에 대한 관리로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수출입계약 및 수송계약 사전승

인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여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대량 실수요자에 한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규정은 유예기간을 두어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10만kWh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 석유사업법 규정으로만 볼 때 도매사업용 천연가스의 수입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매사업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석유공사가 석유비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면제하였으며, 1회 수출입물량이 소방법 15조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이고 10ℓ 이하의 용기에 포장된 석유제품의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 수출입등록을 면제하던 것에서 10ℓ 이하 용기포장요건을 삭제하였다. 또한,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자와 연간 10만kWh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수출입계획 신고의 무도 폐지하였다.

(3) 석유판매업 분야

석유판매업분야는 신규진입 제한, 판매구역제한 및 거래상대방의 선택제한 등 그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왔던 각종 규제사항을 실질적으로 철폐함으로써 금번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의 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볼 수 있다. 석유판매업에 대한 이러한 경쟁제한요인들은 그간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영역의 보호를 위해 요구해 왔고 정부로서도 석유유통질서의 유지 등을 이유로 인정해 왔던 것들이나 경제·사회전반의 급격한 규제완화의 기조에 따라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일반대리점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자기소유 요건을 삭제하여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수송장비 및 저장시설 등의 임차행위를 현실화하고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판매구역 확장시 최소시설기준의 2/3 이상의 저장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대리점의 판매구역제한

을 사실상 철폐하였다. 또한, 그간 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선박급유업에 대해 석유사업법령상의 등록기준 대신에 항만운송사업법상의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자기소유요건을 폐지하여 입차에 의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유소 등록신청시 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본 제출의무도 삭제함으로써 주유소의 신규 개업 및 제품공급선의 선택 및 전환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일반판매소·이동판매소·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 등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에 대해서도 석유판매업 신고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제출의무가 삭제되었다.

(4) 기타 규제완화 관련 사항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한 일정기간내 사업개시 의무, 사업개시 및 휴·폐지, 휴지한 사업의 재개시 신고의무, 사업의 양도나 합병 등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시 신고의무 등도 폐지하였다. 또한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매년의 석유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 제출의무를 폐지하였으며, 연간 10만kl 이상을 소비하는 주요 석유소비자들에 대한 석유소비실적 및 계획 제출의무도 삭제하였다.

한편, 석유비축제도 관련사항으로 지난번 법개정시 도입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석유비축대행업등록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한 석유비축계획 수립 및 제출의무도 폐지하였다. 또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나 외환시장의 악화 등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의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석유비축의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해 요구하던 석유제

품 품질규격 공시 및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정부에 의한 품질기준으로 단일화하였다.

이와 함께 석유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의 업무에 관한 장부비치의무도 없어졌으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고, 주유소 및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상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5백만원 및 3백만원에서 2백만원 및 1백만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시행규칙상 규정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미충족시 및 석유비축의무 위반시의 과징금상한액 2억원 은 상위법과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였다.

나. 석유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관련 규정의 개정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과 관련해서는 국내 석유산업 및 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과금의 징수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석유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이 납부대상 석유의 통관일(통관이전)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부과금의 납부가 사후납부제로 바뀜에 따라 세관장에 의한 부과금 납부확인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그 대신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석유공사에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석유공사사장이 발급하는 부과금납부서에 의해 납부를 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 석유수입자들은 사실상 평균 1개월분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다만, 동 규정은 금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시행시기를 2000년 1월 1일로 연기하였다. 한편, 사후납부제로의 전환에 따라 수입석유를 담보로 한 부과금의 징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부과금의 체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그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100분의 5를 부

과하던 가산금을 금융기간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체납일당 10,000분의 5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체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간,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이었으나 징수금액에 비해 행정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던 각종 유통유 및 유통기유는 부과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나 석유대금 지급조건의 악화 등으로 석유사업자에게 과다한 자금부담이 초래된 경우에도 수입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과금의 환급과 관련해서는 그간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 납부한 부과금을 환급해 주었으나, 이번 법령개정을 통하여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이 아닌 부산물도 환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산물을 환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경기준의 강화, 석유수요의 경질화에 따른 정제시설의 고도화, 새로운 정제기술의 개발 등으로 부산물의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되는 부산물의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국내생산 부산물의 경우 원료인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시 부과금을 부과함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로필렌, 유탕, 중유분해잔사유(FCC), 석유코크스가 환급대상 부산물로 포함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부산물의 출현에 대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내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부산물에 대하여는 향후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 부산물의 환급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부산물에 대한 환급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한전의 탈황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고유황중유를 탈황시설을 갖춘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을 환급하도록 하였으며, 석유제품중 일부가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한하여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기타 주요 개정사항

석유의 품질관리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규정의 보완이 있었다. 석유판매업자별 취급제품 관련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위하여 해당 업종의 취급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보일러 등유의 신설에 따라 등유의 차량용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등유를 경유용 차량에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일반판매소 및 이동판매소에 대해서는 그간 실소비자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였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서도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대상의 일부가 조정되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의 범위에 유사휘발유뿐만 아니라 유사경유도 포함하여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금번 법령개정작업에서 시행규칙상 품질검사방법관련 규정이 일부 보완되었는데 이는 그간 고시에 의해 운영하던 사항을 시행규칙에 옮겨 온데 불과하며, 내용상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3. 맺음말

세계적인 석유공급 초과현상 및 이에 따른 저유가시대의 지속,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석유수요의 감소, 국내의 석유산업의 급격한 구조개편 및 석유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등 석유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급변하고 있다. 금번 법령개정에서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국내 석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사업자들의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적극 제거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석유사업자들도 치열한 경쟁환경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과 새로운 시장여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변신노력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